



보고	배포시	배포	2024.4.24.(수)		
담당부서	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한 구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김재갑	(02-3145-7205)

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

- 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*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(“~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~” 등)가 있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* '24.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.22일부터 사전검사 중

< 정기검사 실시 배경 >

-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하는데, '22.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
-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*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('24.2월)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

※ 사고검사 결과 파악된 내용

-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·행사(허위계약서 작성 등)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
-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(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)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여 횡령
 -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하여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 발생

- ①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(특히,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)은

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
- ② 아울러,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*

* 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 확인

- ➔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

□ 한편,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

- 지주회사법, 은행법 등 관련 법규*에서 정하는 대주주(농협중앙회) 관련 사항과

* 금융지주회사법(\$45의4), 은행법상(\$35의4)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

-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